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 가능함을 명시 〉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07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 가능함을 명시	3
※ 참고자료	
- 설립 통합 유형 통합운영학교 현황('25.10. 기준)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

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Ⅲ. 검토의견

1.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 가능함을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 ----- ----- ----- -----통합(학교급을 통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설하여 통합·운영-----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통합운영학교는 초중학교, 중고학교와 같이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이는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운영을 통해 인프라·교

원·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교가 없거나 줄어드는 지역에서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며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 2025년 시·도별 통합운영학교 운영 현황('25.4. 기준) >

(단위: 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초중	2	-	1	3	-	1	-	1	17	2	11	6	5	9	9	4	5	76
초중고	-	-	-	4	-	-	-	-	1	-	-	-	1	-	-	-	-	6
중고	3	4	1	1	1	1	1	1	2	3	-	13	9	8	7	3	1	59
합계	5	4	2	8	1	2	1	2	20	5	11	19	15	17	16	7	6	141

자료: 교육부

< 연도별 통합운영학교 현황 >

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학교 수	107교	118교 (+11)	122교 (+4)	129교 (+7)	132교 (+3)	141교 (+9)

자료: 교육부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통합의 근거규정을 두면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통합 운영 시 학교의 규모, 지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였음²⁾.

□ 개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만으로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학교 신설 시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의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학교 시설·교원·예산의 통합 운용을 통해 소규모 학교 문제 해소 및 교육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입법실익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규정은 학교,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학교 신설 시에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을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을 규율하지 않고 있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실제로 학교 설립 당시부터 통합운영학교로 신설된 학교는 2025년 기준 34교가 존재함³⁾. 또한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백운호수중학교의 경우, 신설과 동시에 기존의 백운호수초등학교와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학교 신설과 동시에 기존 학교와의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는 사례임.

< 통합운영학교 유형별 현황('25.9. 기준) >

(단위: 교)

통합 유형	기존 학교 통합		설립 통합	계
	폐쇄	미폐쇄		
학교 수	35	72	34	141

※ 통합운영학교의 유형

① 기존 학교 통합 : 기존의 2개(초·중, 중·고) 또는 3개 학교(초·중·고)를 통합하는 경우(시설 폐쇄, 미폐쇄형으로 세분화)

② 설립 통합 : 학교 설립부터 통합운영학교로 신설된 경우

자료: 교육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에 통합·운영하는 형태를 별도로 규정하여 학생의 통학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함
- 다만, 현행법은 학교 통합·운영의 형태·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동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교 통합·운영의 형태·방법 등은 지역의 교육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연하게 정함이 타당함.

3) 구체적인 현황은 '참고자료: 설립 통합 유형 통합운영학교 현황('25.10. 기준)' 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현행 법령에서도 학교를 신설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신설을 전제한 통합을 별도 규정시 무분별한 통합운영학교 설립 요구가 우려되며, 부득이 개정할 경우 신설요건을 제한할 필요 존재

※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일부 주민 등의 반대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통폐합 등)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법 개정시 소규모학교 증가가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설립 통합 유형 통합운영학교 현황⁴⁾ 기준

※ 설립 통합 유형: 학교 설립 당시부터 통합운영학교로 신설된 학교

연번	시도 (학교수)	통합 형태	학교명	통합 연도	통합 유형	규모	설립 구분
1	서울(2)	초·중	해누리초·중학교	2019	설립	대도시	공립
2			강빛초·중학교	2021	설립	대도시	공립
3	부산(2)	중·고	부산국제중·고등학교	1998	설립	대도시	공립
4			부산장대현중·고등학교	2023	설립	대도시	사립
5	대구(1)	초·중	대구팔공초·중학교	2021	설립	대도시	공립
6	인천(2)	초·중	인천경연초·중학교	2020	설립	대도시	공립
7			인천청호초·중학교	2021	설립	대도시	공립
8	광주(1)	중·고	광주예술중·고등학교	2022	설립	대도시	공립
9	대전(1)	초·중	대전둔곡초·중학교	2024	설립	대도시	공립
10	울산(1)	중·고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2014	설립	대도시	공립
11	세종(2)	초·중	산울초·중학교	2025	설립	중소도시	공립
12		중·고	해밀중·고등학교	2021	설립	중소도시	공립
13	경기(14)	초·중	목동초·가평북중학교	1999	설립	면지역	공립
14			향산초·중학교	2020	설립	읍지역	공립
15			하랑초·중학교	2021	설립	중소도시	공립
16			관교대장초·중학교	2021	설립	대도시	공립
17			배다리초·중학교	2023	설립	대도시	공립
18			시화나래초·중학교	2023	설립	대도시	공립
19			배곧라라초·중학교	2024	설립	대도시	공립
20			과천울목초·중학교	2024	설립	중소도시	공립
21			규장초·중학교	2025	설립	대도시	공립
22			도현초·중학교	2025	설립	읍지역	공립
23			처인초·중학교	2025	설립	면지역	공립
24			모담초·중학교	2025	설립	대도시	공립
25		중·고	내손중·고등학교	2025	설립	중소도시	공립
26		초·중·고	울면초·중·고등학교	2001	설립	면지역	공립
27	강원(1)	초·중	퇴계초·중학교	2021	설립	중소도시	공립
28	충북(2)	초·중	충주대소원초·중학교	2020	설립	면지역	공립
29			생명초·중학교	2021	설립	읍지역	공립
30	전남(2)	중·고	매성중·고등학교	2020	설립	중소도시	공립
31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	2024	설립	중소도시	공립
32	경남(3)	초·중	진영장등초·중학교	2021	설립	읍지역	공립
33			금오초·중학교	2020	설립	면지역	공립
34			금송초·중학교	2025	설립	면지역	공립

4) 자료: 교육부